

서면브리핑

2015년 7월 2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가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 열 과장(2110-1520)

[보고 안건]

가. 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 신영규 팀장(2110-1370)

2015년 제33차 위원회 결과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,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

[의결안건]

가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
관한 건

-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('15.8.4. 시행)됨에 따라,
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
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
-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치정보사업 양수·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,
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하는 기준
등을 규정하였으며, 동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
'15.8.4. 시행될 예정임

[보고안건]

가.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 (고시)
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'1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여,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별 징수구간을 설정하고 징수율 구간별 기본징수율에 감경 요인 * 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결정하였음

* KBS·EBS : 1/3 이내 감경가능, 직전년도 적자발생사업자 1/2이내 추가 감경 가능

- 이에 따라 ▶중앙지상파 4사는 1.54%~4.3%로, ▶지역방송은 0.65%~2.3%로, ▶라디오 및 지상파 DMB에 대해서는 0.15%~2.3%로 각각 결정하였음.

< 징수율 구간 및 기본징수율 >

방송광고매출액	징수율 구간	기본징수율(%)
1조원 초과	5.0% 초과 6.0% 이하	5.3
1,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	4.0% 초과 5.0% 이하	4.3
5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	3.0% 초과 4.0% 이하	3.3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2.0% 초과 3.0% 이하	2.3
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	1.0% 초과 2.0% 이하	1.3
50억원 이하	1.0% 이하	0.3

- 종편·보도PP에 대해서는 과거 SO, 위성방송에 대한 최초 분담금 징수율 1% 적용 시 해당 사업자군이 흑자 전환 상태였던 점, 종편·보도 PP가 전체적으로 여전히 적자임을 감안하여 징수율을 0.5%로 설정하되,
- 적자상태 있는 해당 사업자군에 대해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두어 '14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종전 징수율을 적용하고 1년 후 ('15년 방송광고매출액 대상)부터 적용하기로 함. 끝.